



Web Contents



2025년 01월 13일 09시 55분

단속기준 및 구간

의견진술

이의신청

주차와 정차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5호)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활영 간격
6대 절대금지 구역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및 정류소 기둥으로 양쪽 10M 이내 버스 정류소 레드존 침범	24시간	1분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혹은 황색노면표시 설치 소화전 반경 5M 내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 5M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시토, 일, 공휴일 제외	
기타구역	황색복선 6대불법주·정차구역 이외 황색복선 구역	24시간	5분
	주차방법위반 대각주차, 터널 안, 다리 위, 이중주차, 안전지대, 과도하게 도로를 막는 주차행위 등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주정차 금지의 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장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 등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 현황

- 이동형(차량 탑재형) 단속 CCTV: 7대
- 고정형 무인단속 CCTV : 84대(일반 48대, 어린이보호구역 36대)

연번	설치주소	촬영방면정보	비고
1	영산로 525	목포 버스터미널	
2	영산로98	목포역	
3	해안로 182	여객선 터미널	
4	청호로 209	신안비치 1차아파트	
5	산정로 174	동부시장	
6	백년대로 291	하나내과 교차로	
7	신흥로 50	하당 광주은행 교차로	
8	신흥로138	하당 이마트 교차로	
9	영산로 98	목포역 사각지대	
10	옥암로 149	아동병원 건너편	
11	연산동 331	연산동 현대아파트	
12	포미로 16	용해초교 입구	
13	수문로 32	목포트윈스타	

14	포미로 19	포미타운 삼거리	
15	옥암동 1152-1	목포 코아루	
16	고하대로 614	목포대교 사거리	
17	북항로 128-1	유달산사거리	
18	영산로 101	목포역 국민은행	
19	신흥로45번길 12	하당 동아아파트	
20	북항로 88	홍일 중학교	
21	죽교동 521	유달산 케이블카	
22	향동 9-1	여객선터미널 제주	
23	상동 251-60	백금당(광신프로그램스)	
24	산정동 1703	오쿠닭(주빌리메디센터)	
25	옥암동 969	옥암 축협 뒤	
26	상동 1139-7	에메랄드 1	
27	상동 1139-7	에메랄드 2	
28	상동 868-1	하당 포르모	
29	상동 869	하당 신한은행	
30	상동 863	하당 이바들	
31	상동 964-3	하당 원예농협	
32	상동 976-1	하당 삼성아파트	
33	고하대로 724	전남중앙병원	
34	연산동 2026-3	연산 골드9차	
35	용당로 308	용해동 신희 사거리	
36	산정동 1068	산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37	호남동 13-4	중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38	북교동 278	북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39	산정동 1706	서부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40	호남동 680	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41	상동 1072	하당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42	상동 1085	한빛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43	옥암동 1082	부영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44	옥암동 1116	미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45	옥암동 1142	애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46	옥암동 1313	영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47	석현동 1169	석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48	상동 196-13	향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49	상동 768	상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50	용해동 240-45	이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51	용해동 929-1	교대부설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52	연산동 1939	백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53	용해동 1006	대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54	용해동 999	용해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55	용당동 1208-3	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56	연산동 1273	연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57	산정동 1813	서해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58	죽교동 573-426	대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59	유달동 8	유달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	서산동 22-60	서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1	산정동 1589	삼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2	산정동 1080-7	연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3	용당동 1028-63	용호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4	상동 1100	신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5	옥암동 1064	청호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6	옥암동 1234-2	옥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7	옥암동 1328	부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8	옥암동 1247-8	성균관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69	산정동 271-22	동초등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
70	상동 1154-7	평화광장	08:00~23:00
71	상동 1160-7	평화광장	08:00~23:00
72	상동 196-13	향도초등학교 정문 앞	
73	옥암동 1071	베키어린이집	
74	상동 1076	그랜드카세차장	
75	상동 1077	포르모 뒤편	
76	상동 1107	하당현대아파트	
77	옥암동 1061	제일풍경채3차	
78	호남동 498	목포역 삼학로 삼거리	
79	죽교동 673	수협공판장	
80	죽교동 673	수협 정문 삼거리	
81	상동 132-2	한국병원	
82	석현동 1030	신청호시장 앞	
83	석현동 900-12	한양립스아파트	
84	석현동 866-14	한양립스아파트	

주정차 단속안내

☑ 교통지도원 단속

- 단속시기 : 연중 계속
- 단속시간 : 08:00~22:00 (행사 및 유관기관 요청 등 교통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주민신고 불법주정차

- 단속구간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화전, 모퉁이(교차로), 인도, 황색복선, 이중주차, 대각주차
- 단속시간 : 24시간
- 어린이보호구역
 - 단속구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단속시간 : 08:00~20: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어플을 사용하여 6대불법주정차금지구역은 1분, 기타 불법주정차금지구역은 5분간격으로 사진 2매 첨부하여 신고

☑ 단속방법안내

구분	단속구역	단속방법
	· 주요 간선도로	

(<http://www.mokpo.go.kr>)

중점단속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법 제32조, 33조의 주정차 금지 장소 -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버스승강장, 다리 위, 황색복선, 터널 안 등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자전거도로 · 이종/대각 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 순회 및 상주 단속 · 즉시 단속 · 등하교시간(8:00~9:00, 14:00~17:00) 집중 단속
일반단속구역	교통 소통에 지장이 적은 도로(황색단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회단속 · 계도 및 20분 유예단속 · 점심시간(12:00~13:30) 단속 유예
특별단속구역	행사지역, 소방도로, 진·출입로 확보, 단속 요청 민원 등에 의해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계도 및 단속(필요시 견인 조치)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MokPo - Si
Web Contents

